

산업·사회 혁신을 위한 초연결지능 교육연구단 운영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카이스트 산업·사회 혁신을 위한 초연결지능 교육연구단(이하 “교육연구단”)에서 추진하는 BK21 FOUR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① 참여교수 선정, 교체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② 신진연구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
- ③ 국제협력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사업운영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및 평가

제2조 (기본원칙) ①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가 유지되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비할 경우 교육연구단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시기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매년 미참여교수를 평가하여 교육연구단에 합류 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조 (평가시기 및 기간) ① 참여교수의 업적평가는 당해 연도 1월에 실시한다.

② 업적 평가기간은 전전년도 12월1일부터 전년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.(연봉제평가 기준)

③ 업적 평가는 계속 참여 여부 및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.

④ 새롭게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미참여 교수에 대한 평가도 동 기간에 실시한다.

제4조 (평가항목 및 배점율) ① 평가는 연봉제 평가표를 원용한다.

② 학술연구실적은 SCI(급) 논문건수, 국내외특허건수, 국제학회 논문건수, 산업체 연구과제 총액 환산건수, 기술료 수입 총액 환산건수의 총합으로 하며, 사업단 기여도에 따라 기여 점수 부여 및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 (평가결과 등급구분) ① 참여교수의 평가결과는 4등급으로 구분하며, 등급별 인원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S급	A급	B급	C급
비율	참여교수의 30%내외	참여교수의 25%내외	참여교수의 25%내외	참여교수의 20%내외

제 3 장 신진연구인력 활용

제6조 (임용) ① 신진연구인력은 KAIST의 연수연구원 임용지침, 초빙교수 활용지침, 연구교원 운영규정 등을 준용하여 임용한다.

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하며 계약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한다. 다만, "병역특례"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최대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한다.

③ 직급의 구분 없이 활용교수 1인당 최대 2인까지 임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,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가. 대학(본·분교 포함)에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한 전직 교원

나.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휴직자

다. 타 대학(본·분교 포함)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

⑤ 임용 전에 교육연구단에서 마련한 별도의 신진연구인력 활용지침을 숙지하고 서명한 후 사무국으로 제출한다.

제7조 (계약교수) ①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. 연구경력 중 Post-doc 경력도 인정한다.

②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SCI논문의 주저자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③ 계약교수 처우는 3XX만원/월 이상으로 하며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.

제8조 (박사후과정생) ①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
② 박사후과정생 처우는 300만원/월 이상으로 하며,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.

제9조 (활용요건) ① 미래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BK사업의 본래 취지에 의거하여 교육연구단 내 연구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진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신진연구인력 활용 시(특히 외국인의 경우), 사전에 지원자의 연구자질 뿐만 아니라 인성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. 선발 후 사업단에 사회적, 윤리적 또는 기타사유로 사업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진인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참여가 종료될 수 있으며, 이는 재임용 시 결격사유로 간주 될 수 있다. 또한 해당 활용교수의 경우 향후 일정기간동안 신진인력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③ 활용교수는 임용자와 공동연구에 힘써 교육연구단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.

④ 활용교수는 임용자가 근무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의무가 있으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연구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.

⑤ 신진연구인력이 사업 참여기간 내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활용교수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진인력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제10조 (탄력적 연봉제 운영)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봉체계와는 별도로 지원자의 우수성에 따른 탄력적 연봉제를 별도로 시행한다. 이런 경우 학과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, 우수성에 따라 최대 연봉 USD 80,000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근무요건) ① 신진인력 임용자는 임용기간동안 사회적, 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. 사회적, 윤리적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연구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진인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, 이는 재임용 시 결격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. 또한 해당 활용교수의 경우 향후 일정기간동안 신진인력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② 임용기간동안 활용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전념해야 하며, 활용교수와의 공동연구 여부는 재임용 시 주요요건으로 고려된다.

제12조 (지적재산권 소속) 교육연구단 내에서의 모든 연구결과물은 원 혹은 교육연구단에 귀속 되어야 한다.

제13조 (외부활동) ①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.외, 주.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.

② 계약교수는 교육.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.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.

③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의미하는 '주 6시간 이내 강의'에서 말하는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(진료 등 의료행위 금지) 사이버 강의,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한다.

④ 박사후과정생 (리서치펠로우 포함) 및 계약교수의 교내 강의에 대하여는 교육연구단 내 교육.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로 지급 여부를 대학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4조 (성과급) 임용기간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평가기준은 SCI 논문 건수, 주저자 여부 등의 논문실적으로 연구단장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제 4 장 국제협력경비 운영

제15조 (국제협력경비) 국제협력경비는 참여인력의 단기연수, 대학원생 장기연수, 해외 석학 초빙,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비 및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.

제16조 (단기연수) ① 단기연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, 단기연수 대상은 석사과정 2년차, 박사과정 4년차 및 석박사통합과정 6년차 이하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대학원생을 동반한 참여교수로 한다.

② 단기연수는 세계 우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직접 발표 및 세계 석학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갖고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실적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발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- 학회참석 후 프로시딩 또는 프로그램 복으로 해당 내용 증빙해야 하며, 기준 불충족시 지원금을 환수 함

③ 여비 지원은 KAIST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, 항공료, 체재비(일비, 숙박비, 식비)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항공료는 이코노미 등급으로, 체재비는 당일 출발 및 도착이 어려운 경우 학회일정 앞,뒤로 하루씩 지원 가능하며 보험료만은 단독으로 지원할 수 없다.

또한 사업비로는 초과 지출된 숙박비의 추가 정산을 할 수 없다.

④ 단기연수 귀국 후에는 귀국보고서(출입국확인서 첨부)를 제출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장기연수) ① 장기연수 목적은 해외 우수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장기 파견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배양 및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국제공동 연구 및 기술협력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.

② 장기연수 기간은 2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며, 대상은 석사과정 2년차, 박사과정 4년차 및 석.박사통합과정 6년차 이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한다.

③ 지원 금액은 왕복항공료와 월 체재비로 하며, 최대 2,000만원까지 지원한다. 월 체재비는 국가와 도시별 등급구분 없이 최초 1개월은 300만원, 그 이후에는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.

④ 장기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다음의 지원 서류(별표 제5호)를 연수기간 최소 15일전까지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가. 장기해외연수 지원신청서 및 연수계획서

나. 지도교수 추천서

다. 연수희망 기관에서 온 초청장

라. 성적표(학사 및 석사, 박사)

⑤ 연수기간 변경 시에는 기간변경 사유를 제출하여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기 지급한 연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
⑥ 장기연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귀국이 필요한 경우 3개월에 대하여 1주일을 허용하기로 한다.

⑦ 장기연수 귀국 후에는 별표 제6호 장기해외연수 보고서(연구실적물 및 출입국확인서 첨부)를 제출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8조 (해외석학초빙) 해외 석학초빙은 KAIST 전문가 활용지침에 따라 활용한다.

제19조 (해외특허 출원,등록비)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경비(OA비용포함)를 지원한다.

제 5 장 기타사업운영경비 운영

제19조 (기타사업운영경비) 기타사업운영경비는 참여인원의 학술활동지원 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.

제20조 (학술활동지원) 학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게재료,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(일회성), 국내전문가 초청경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 (행정 전담인력 성과급) 교육연구단 행정전담인력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사업기간의 성실성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.

제22조 (기타)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.

제23조 (기타기여도 성과급) 연구보고서 작성, 교육연구단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연구단 운영에 기여도가 있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일반사항

제24조 (일반사항) ① 이 운영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한국과학기술원 규정/지침을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